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제6차 국제보건규칙 개정 작업반 회의 모니터링

과제명

- 2023년 다자기구 회의 감염병 분야의 제대응 전략 연구

출장기간

- 2023.12.06.(수)~2023.12.10.(일)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 제네바

출장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2.06	서울(한국)	-	-	서울 출발/제네바 도착
12.07	제네바(스위스)	WHO 본부	WHO회원국	제6차 작업반 회의 참석
12.08.	제네바(스위스)	WHO 본부	WHO회원국	제6차 작업반 회의 참석
12.09	제네바(스위스)	-	-	제네바 출발
12.10	세종(한국)	-	-	세종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서울 출발/제네바 도착

일 시	2023.12.06 (수)
장 소	인천국제공항 → 스위스 제네바
참석자	김수진 연구위원
출국	
②	제6차 국제보건규칙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일 시	2023.12.07 (목)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김수진 연구위원
<p>의제 1 Opening of the session and adoption of the agenda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의제를 채택함. 그간 진행된 논의를 소개했고 6차 회의에서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사무국 및 회원국이 제안한 문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p> <p>의제2 Overview of the proposed approach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s following the finalization of the second reading of all articles 사무국은 공중보건위기 대비, 대응 자금조달 현황을 설명하고 분절된 도너기반 자금조달을 국가 주도로 만들기 위한 옵션들을 제안함. 회원국들은 의무이행에서 국내 자원의 한계를 제기하며(인도) IHR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 기전과 의료적 대응책 포함을 강조했고(에티오피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투자 등 제한된 자금의 가치있는 사용을 강조함(브라질). INB와의 지속적인 공동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호주, 콜롬비아, EU 등) UN의 다른 협약의 자금조달 기전들을 살펴볼 것을 제안했고(호주) 분절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및 다양한 개체들의 조정을 강조하며(EU, 브라질 등) 국가의 리더십과 오너십을 강조하며(에티오피아 등) 플랫폼 구성 아이디어를 지지함(보츠와나 등). 회원국들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회원국들은 53A, 53 bis, 54, 54 bis, 44조와 44A조, 부속서 1과 부속서10과 관련해 진행된 작업을 소개했고 다음 회의 전에 제안된 문구를 공유하기로 함. 회원국들은 관련해서 INB 이행위원회 구성 논의 및 협동기구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고(미국)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이행위원회 구성을 강조함(아프리카 지역). INB와 일관성 있는 논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금조달 기전 도입을 강조했고(아프리카 지역) 13A조 등과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함(아프리카 지역). 회원국들은 13조, 13A조, 44조와 44A조, 부속서 1 및 새로운 부속서 10과 관련해 제안을 검토하고 비공식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PHEIC의 정의 및 기준, 결정과정 등과 관련해 INB와의 조정 및 세부그룹 구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다음 회의에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로 함.</p> <p>의제 3. Consideration of text proposals from the Bureau, Member States and regional groups</p>	

19조 사무국은 현재 ihr 문구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함(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EU 등)

24조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사무국 안을 지지했고(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피지, 브루나이, 호주 등) 현재 IHR 유지를 선호한다는 입장도 제기됨(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라과이) 일부 회원국들은 문구수정을 제안했는데 1a항의 마지막 부분에 and feasible for the operator 추가를 제안했고(일본) 회원국들은 추가 문구의 불필요성과(브루나이) 조항의 약화(피지), feasible 측정의 문제를 제기했고(남아공) 일본은 보다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feasible 대신 적절한 단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싱가포르는 promptly implement 다음에 명확화를 위한 as necessary 추가를 제안했는데 회원국들은 추가 문구의 불필요성과(브루나이) 필수성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였고(인도, 남아공) 싱가포르는 제안을 철회함. 일부 회원국들은 1a항의 이행관련 국가법을 준수하며 문구 추가를 제안했는데(스위스, 이란 등) 다른 국가들은 국가법 준수는 1조에서 다뤄지는 문제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피지 등) 사무국이 국가가 채택한 것으로 문구 추가의 불필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스위스는 이를 철회함(피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또한 promptly 단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이란) 빠르게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필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제기되었고(아르헨티나) 시간 제한 문구의 필요성 등 보다 명확한 용어 사용 필요성을 제기함(중국). 1a항의 isolation과 quarantine이 WHO의 권장사항에 근거한다는 문구의 필요성을 제기함(인도) EU는 1항의 a 와 b에서 on board 뒤에 추가와 1a항 마지막에 국제적 교통 및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는 관점에서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는데 회원국들은 at land와 관련해 국경에 걸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삭제를 제안했고(브루나이, 나이지리아) 1a항 마지막 추가 문구 또한 전반적인 원칙에서 이미 확인되는 것으로 반복적 언급의 불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의장) EU는 두가지 제안을 모두 철회함. 1b항과 관련해 나이지리아는 코로나 경험에 근거해 inform travellers 뒤에 in a timely manner 추가를 제안했고(나이지리아) pursuant these regulation 과 같은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밝힘(방글라데시)

27조 회원국들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28조 사무국은 IHR 원문 유지를 제안했고 대체로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했는데(일본, 칠레, 콜롬비아) 인도는 2항 수정에 대한 입장을 다음 회의에서 밝히기로 함(인도). 추가로 22조의 d 에서 conveyance operator의 명확화를 위해 including pilot and captain 추가를 제안했고(일본) 사무국은 현재 1조에 conveyance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가 있다고 설명함.

부속서 4 사무국안을 지지하는 의견과(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미국 캐냐 일본 등)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IHR 문구 유지를 제안함(브라질, 피지, 칠레 등)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1항의 앞부분과 (c)의 문구 불일치로 재구성을 제안했고(사우디아라비아, EU) 추가로 EU는 safe disembarkation of travellers 문구를 추가했는데 회원국들은 문구의 명확화를 요청함(인도, 나이지리아). (c)의 plan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과(싱가포르, 인도 등) disembarkation 동안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고(미국)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보다는 권장되는 조치로 문구 수정이 제안되었으며(인도) shall을 사용하는 의무조항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싱가포르, 피지)

23조 코로나 동안 passenger locator form이 국제 여행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관련 레퍼런스 포함을 제안했고(EU) 브루나이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름을 고려해 특정 용어 사용보다는 일반화가 편리하며 이미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는데(브루나이) EU는 다음 팬데믹 상황에서 최상의 도구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함. 회원국들은 대체로 사무국 안을 지지함(모나코 브라질 아프리카지역 브루나이 중국 등)

31조 회원국들은 현재 IHR 문구를 유지하는 사무국 안을 지지함

35조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문제가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고(아프리카지역) 디지털화를 포괄적으로 지지하지만(중국,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밸언함(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2항에서 EU는 any state party 문구 추가를 제안했으나 보츠와나 등은 이를 반대함. 3항에서 measure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인도 호주) 싱가포르는 제공된 척도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을 제안했는데(싱가포르) 국가들은 3항의 authenticate으로 인한 부담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3항의 수정을 요청함(일본, 노르웨이). EU는 4항에서 authenticity 와 함께 interoperability 포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일부 국가들은 interoperability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어렵다고 밝혔고(인도, 보츠와나, 케냐 등) EU는 다시 상호호환성은 의무라기보다는 WHO가 협의를 통해 상호호환성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라는 의미라고 설명함(EU). 한편 4항 technical recommendation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guideline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대체로 회원국들은 사무국안을 지지함(브라질, 피지, 보츠와나, 호주, 나이지리아 등). validity와 authenticity 개념 질문에 대해 사무국은 전자는 백신 등에 사용하며 후자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함. authenticity 확인은 당사국의 행정 센터 연락 능력을 통해 이뤄지며 부속서 6 사무국 개정안은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국가 발급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함.

36조 3항과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경험에 근거해 특정 보유자가 질병 보균자가 될 위험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다른 유형의 증거를 강조하며(EU) 회복 증명서 등의 포함을 지지한 반면(이란, 터키) 대체로 관련한 근거 확인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일본 등) 추가 건강 조치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추가 조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인도) 과학적 사고의 차이로 상호간 합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모호함을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브루나이 등)

45조 회원국들은 대체로 현재 IHR 문구를 유지하는 사무국안을 지지했으나(이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지역, 피지, 브리질 등) 일본은 개인데이터 기밀성과 시민 보호에 있어 authorization 획득에 대한 문구 추가를 제안함(일본, EU)

부속서 3 회원국들은 대체로 현재 IHR 문구를 유지하는 사무국안을 지지함(브라질 등)

부속서 6 1항에서 보다 일반적인 의도가 드러나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추가(브라질) 미국은 listed or prequalified for emergency use by WHO 추가 제안했고 미국 안에 대해 리저브(브라질) 중국은 미국 제안과 관련해 법적문서이므로 모얼 적절한 용어 사용.(중국)"designated by WHO" 보다 일반적인 용어 사용 요청(중국). 3항 마지막에 많은 국가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WHO 외에 competent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of State Party which territory the vaccine was administered 추가를 제안하며(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사무국은 실제로 WHO가 승인한 백신은 긴급 사용 목록에 있는 백신과 현재 사전 자격을 갖춘 백신을 의미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설명함. 4항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사항과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을 환영(호주)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임상의를 식별하기 위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구(호주) 그러한 정보가 없는 오래된 백신의 경우 종이 인증서에 연락처 정보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우려(?) 일본은 and contact information 과 or other relevant national entity 문구 삭제 제안. 추가의 가치 있는지 의문이므로(일본, 페지, 브라질) Asks for the addition of a designation to the deletion of contact information for both paper and digital certificates.(페지, 일본) 의사 확인이 주는 의미와 정확히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4a 리저브함(블루나이)데이터 최소화 목적으로 임상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 임상의의 개인 이름이나 직무보다 센터에 대한 증거나 정보가 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eu) 확인을 위해서는 공식 도장이면 충분하다고 명시하면서 연락처 정보 삭제를 제안(중국)인증서에 임상의의 세부정보를 보존(인도네시아) 서명과 같은 일부 요소가 디지털 형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디지털 형식에 대한 차별화된 요구 사항의 필요성(EU). 8항 동의와 관련된 8항에 대한 사소한 조정을 제안함(호주) 미성년자의 예방 접종을 위해 부모의 서명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콜롬비아)

부속서 8 사무국은 현재 IHR 문구 유지를 제안했는데 브라질은 river 포함이 필요하므로 제목에서 maritime 대신 vessel 사용을 제안했고(브라질 등) 사무국은 ship에 대한 정의가 있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ship 사용을 제안함.

③	제6차 국제보건규칙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일 시	2023.12.08. (금)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김수진 연구위원

15조 회원국들은 1항과 관련해 계층화된 경보시스템을 고려한 pre-PHEIC에 대한 임시권고안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며(인도, 미국) 계층화된 경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고려해 향후 합의가 만들어지면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미국).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PHEIC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여 매우 많은 사건에 대해 임시권고안을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브루나이, 캐나다 등) 또한 사건의 충위를 구분하는 것은 복잡성을 키우고 국가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므로(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등) 임시권고안은 PHEIC으로 제한 할 것을 강조함(브라질). 2bis항의 a를 지지한다는 입장과(일본, 캐나다, 영국, 한국 등) WHO가 매우 많은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WHO의 의무를 약화시키기 위해 shall을 should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중국). 또한 일부 회원국들은 WHO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권 문제이므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미국, 콜롬비아). 사무국은 WHO 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문구 추가는 불필요함을 확인함. 회원

국들은 또한 international 팀 외에 지역 팀 추가를 제안했고(EU, 아프리카 지역, 모나코, 캐나다 등)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international이나 지역팀이 아니라 WHO가 책임지는 전문가팀임을 강조했는데(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관련해 “WHO가 운영하는” 문구 추가를 제안함(미국, 태국). 관련해서 사무국은 국제 팀 용어는 13조에서 사용한 용어임을 확인함. b항과 관련해 가이던스 대신 recommendation 사용을 제안하는 입장과(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아프리카 지역 등) 모든 문구는 임시권고안과 관련되므로 recommendation 용어 사용의 불필요성을 지적함(노르웨이, 콜롬비아 등). 어떤 종류의 가이던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필요하므로 2bis b 앞부분에 보건제품의 접근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제공한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함(일본). 사무국은 IHR standing 및 temporary recommendation 권고안 정의를 고려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이던스나 advise 용어 사용을 제안했고 문구의 의미는 임시권고안에서 어떻게 접근성 보장할지 WHO가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회원국들은 할당 기전과 관련해 추후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다양한 기전을 염두에 두고 “WHO 기전을 포함한”으로 수정을 제안했고(호주) 팬데믹 동안 생산이 제한되는 국가들을 위해(필리핀) 공평하고 형평한 접근을 위한 용어 추가를 제안했는데(말레이시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접근성과 혜택은 팬데믹 조약 등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에서 삭제를 제안함(영국). 2항의 regarding persons 뒤 including health products를 넣으면 2b는 필요없다는 의견과(미국, 호주) a 항의 마지막 부분에 현장 지원 뒤에 “all the other necessary assistance” 추가할 경우 b항의 필요성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러시아) 이에 대해 맥락이 다르므로 2bis b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아르헨티나). 일부 회원국들은 사무국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제기했고(캐나다, 모나코, 영국, 한국 등) 또 다른 회원국들은 복잡성일 피하기 위해 현재 문구 유지를 제안함(칠레, 브라질).

16조 및 17조와 관련해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차후 검토하기로 함

18조 1항에 건강검진 문서 외에 health declaration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포함을 제안함(중국). 3항과 관련해 1항과 2항에서 may 조동사 사용을 고려해 3항에서도 may 사용을 제안하는 의견과(이란) shall을 유지하는 안이 제안됨(나이지리아). (a) 항 관련 EU는 기존에 제안했던 문구를 포함할 것을 다시 제안했으며(EU) 일부 국가들은 국제 여행의 ensure 보다는 facilitate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미국, 노르웨이). 필수 여행과 관련해 회원국이 PHEIC 상황에서 필수 여행을 정의한다는 작업반의 그간 논의가 잘 반영되었다는 의견과(페지) 1조에서 ‘필수적인’의 정의 필요성과(중국, 칠레) 보건의료인력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health를 삭제하고 필수인력으로 수정을 제안함(EU, 터키, 미국). 3(b)에서 국가 및 지역마다 필수적인 건강제품 및 food supplies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essential 삭제를 제안함(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지역).

한편 대체로 다수 국가들은 사무국안을 지지했고(브라질, 베르코우스, 페지,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3(b)항의 위치를 조정하고(인도) 현재 문구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됨(인도, 인도네시아).

42조 사무국안을 지지하는 의견과(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페지 등) 현재 IHR 문구를 유지하는 안(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칠레, 이스라엘 등)이 비슷하게 제기되었는데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자에게 의무를 만드는 것은 IHR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임을 강조함. IHR 조항 어디에도 NSA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의견에 대해 페지는 24조에서 당사국은 conveyance operators가 필수적인 수단을 취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스위스는 compliance와

이행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함. 한편 사무국은 NSA의 정의와 관련해 FENSA의 NSA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entities, the philanthropic Foundation and the Academy academic institutions의 4개 조직이라고 설명함. 한편 일부 국가들은 건강도구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문구에 “형평한” 단어 추가를 제안함(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들은 43조 및 56조, 4조, 5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고 늦게 제출된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받기로 함.

의제4 Proposals from Member States for entities to be included in Annex D and/or Annex E of document A/WGIHR/4/6 [if any]

제안된 의견 없음

의제 5 Report of the meeting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회의록을 검토하였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함.

의제 6 Closure of the session

공동의장은 1월에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2월과 4월에 논의를 지속하여 5월 총회에 개정안 팩키지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며 코로나 교훈에 기반해 INB와 함께 하며 형평성을 다뤄야 하는 임무 있다고 밝히며 참여한 회원국 및 사무국, 회의 지원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종료함.

④	귀국
일 시	2023.12.09.(토)
장 소	제네바 국제공항
참석자	김수진 연구위원

귀국

⑤	귀국
일 시	2023.12.10.(일)
장 소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세종 이동
참석자	김수진 연구위원

귀국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제6차 국제보건규칙 개정 작업반 회의
	